

「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 동의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민간위탁을 통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라면을 테마로 한 이색축제 개최로 지역대표 축제 육성하며,
- 사업의 기획·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및 전문기술 활용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·축제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

- 1) 사업위치 : 구미시 일원
- 2) 예 산 액 : 400백만원(시비)
- 3) 사업내용 : ‘라면’을 테마로 한 이색 시민참여형 축제 프로그램 운영
 - 세계라면 음식문화 체험 및 이색 레시피 라면 푸드코트 운영
 - 라면을 주제로 한 전시회(회화, 사진 등) 개최
 - 각종 부대행사 및 무대공연 프로그램 운영

나. 추진근거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- 2) 「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」 제5조(관광진흥사업 및 추진 지원)
- 3) 「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」 제15조(업무의 위탁)
- 4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다. 위탁사무

- 1) 라면 축제 총괄 운영
- 2) 축제·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출연진 섭외
- 3) 축제 홍보마케팅, 경연 프로그램 운영 시 모집 요강 제작, 작품접수
· 심사· 시상, 전시회 개최 등
- 4) 안전한 행사를 위한 행사장 안전관리

라. 위탁기간 : 3년

마. 위탁조건

- 1)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, 책임성, 공신력이 높고 사업수행에
필요한 인력 및 노하우를 보유한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- 2) 최근 2년 이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관련분야
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

- 1)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

가) 선정 심의위원회

- 구성 근거 :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
- 구성 인원 : 6명 이상 15명 이하 (위원장 1 포함)
- 위원 자격
 - 위탁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장 또는 실·국·소장
 -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
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 -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
 - 변호사·공인회계사·노무사·기술사·건축사·세무사 등 관련
자격이 있는 사람
 -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, 사회적
경제 전문가
 -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·공정성 등을
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2) 평가내용 : 사업계획, 사업수행능력, 전문성 종합 심사

가) 평가표(안)

평 가 항 목			배 점			비고
			우수	보통	미흡	
사업 계획 (30)	총 실 성	사업 취지의 이해도 및 운영의 투명성	10	7	3	
	실행가능성	효율적 예산편성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여부	10	7	3	
	홍보계획	홍보 수단(채널)의 다양화	10	7	3	
사업 수행 능력 (40)	보유능력	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보유 정도	15	10	7	
	독 창 성	프로그램의 차별성, 창의성	15	10	7	
	안전관리 (방역)계획	행사장소 시설물 안전관리 및 방역계획 수립 여부	10	7	3	
전문성 (30)	유사 과업 수행실적 (3억 원 이상, 축제 행사 관련)	5회 이상 30	30	20	10	최근 2년 내 수행실적
		3회 이상 20				
		2회 이하 10				

3) 평가방법 : 사업계획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

아. 성과평가결과(재계약/재위탁일 경우 작성) : 정산 시 성과 평가 실시

자.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: 해당 없음

4. 부서의견

○ 매년 지속 개최 가능할 수 있도록 행사추진에 대한 전문성 및 효율성 (피드백)을 감안하여 민간위탁함이 타당함.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<구미라면축제>의 기획과 집행 등의 총괄적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축제나 행사의 기획·시행은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요한 사무로 능력을 갖춘 민간 업체와 전문가를 통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,
- 집행부에서는 <구미라면축제>가 구미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 매김하여 관광객 유치 등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,
- 민간 위탁에 대한 관련 법과 관련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위원으로 <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>를 구성하여 수탁 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, 공신력과 사업 수행능력을 탄탄히 갖춘 수행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